

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.

-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‘사업장 쪼개기’ 등을 근절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4.29.(수) 부산일보(온라인), “남들 쉬는데...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”
- 4.30.(목) 뉴스토마토, “‘노동절’ 바뀌고 ‘공휴일’ 됐지만...5인 미만·특고 노동자 ‘설킨리’는 아직” 관련

<부산일보 주요 기사 내용 >

- A 씨 직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. 그는 “이번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”며 “휴일 수당은 당연히 못 받을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의 의미가 없다”고 말했다.
- “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20명이지만, 16명은 용역 업체에 위탁을 줘 4인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쓰며 근로기준법을 피해 구제 신청도 어렵다”고 주장했다.

<뉴스토마토 주요 기사 내용 >

-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않습니다. 일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피하고자 일부러 직원을 다섯 명 미만으로 고용하기도 합니다.

2. 설명 내용

- 노동절은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됨
- 따라서,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(소정임금 100%)을 지급하여야 함

○ 또한,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에 따른 임금(100%)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

□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‘사업장 쪼개기’, ‘가짜 3.3 위장 고용’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

○ ‘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*’를 통해 노동절 관련 임금 지급 및 휴일 운영,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사례 등 법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접수하고,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할 방침

* '26.2월부터 운영,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(labor.moel.go.kr) - 민원신청·조회 - ‘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’에서 신고 가능

□ 또한,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김영덕 (044-202-7616) 오혜란 (044-202-7973)
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박종길 (044-202-7612) 오성곤 (044-202-7533)

